

간호보조원 양성제도의 어제와 오늘

—황 금 복

<보사부 결핵예방과>

간호보조학원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간호보조학원 전임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9월 1~2일 동안 본회 강당에서 실시됐다.

본지는 이날의 보수 교육 중 1일에 있었던 황금복씨의 「간호보조원 양성제도의 어제와 오늘」과 2일의 최상순교수의 「간호보조원의 업무 및 기능」을 발췌 수록한다.

<편집자 주>

서 론

1. 목적 및 사회적 배경
2. 간호보조원 양성제도의 변천
3. 간호보조원 양성과 자격
4. 간호보조원의 업무
5. 간호보조원의 법적근거

결 론

※ 참고 문헌

서 론

건강과 문화생활, 부유한 인간사회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국가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며, 복지국가 형성을 기본적인 방편으로 국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코자 1956년 12월 30일자로 보건소법(법제406호)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국가적인 보건의료사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국부적인 사업으로 부진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나, 5.16 혁명 이후 보건소법 개정(62.9.24. 제1160호)등 정부의 강력한 사업추진과 전국 보건관계요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병원, 보건소를 연결하는 보건의료망의 완비와 광복할만한 사업의 확장을 조직적으로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

직만으로는 보건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없으며, 그안에서 활동하는 보건요원의 자질개선이 보다 중요한 과제였었다. 갑자기 확장된 보건의료망에 따른 유자격요원 확보란 그 당시 것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므로 단계적으로 간호원 수급계획을 조절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무자격요원을 단기양성시켜 배치키 위한 수단으로 의료보조원법을 개정(66.7.25)하여 간호보조원제도가 탄생하였다.

1. 목적 및 사회적 배경

보건의료망 확장에 따라 보건지소 설치령이 제정되므로써 이 령에 따라 193개 보건소 및 1,473개 읍·면 보건지소 중 1개지소당 의사 1명, 간호요원(간호원 및 조산원) 3명을 배치되었으나 의사 확보는 물론 간호요원 확보란 거의 불가능하여 무자격요원으로 보충하는 실정이였었다. 그 당시 간호원의 해외진출붐(서독)으로 말미암아 근무조건이 나쁜 보건소 간호원의 이직율이 상승함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간호요원확보가 문제시되어 그 대응책으로서 장기계획으로 간호학교에 정원을 증원하고, 단기계획으로는 현직에 근무하는 가족 계획요원중 보건

연구원 단기 교육반을 마치면 의료보조원법에 의거 의료보조원 면허증을 주었으며, 그의 요원들은 정부에서 선발시험을 치루어 성적 순으로 ABCD로 구분, AB는 몇 주간만 가족계획교육(720명 정도)을 CD는 단기과정으로 국가고시없이 간호보조원 면허를 부여하여 보건분야의 간호요원 부족수를 간호보조원으로 충당코자 본 제도가 시도되었었다.

2. 간호보조원 양성제도의 변천

의료보조원법 시행령(1966. 7. 25 대통령령 제 2665호)이 개정됨에 간호보조원 제도가 신설되어 단기과정으로서 양성기간이 6개월과 4개월 두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반반으로 나누어 이론 3개월, 2개월로 간호학교에서 훈련시켰으며, 실습은 3개월, 2개월로 현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임시근무 형태의 실습을 인정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간호보조원면허를 주었었다.

그 후 간호보조원의 양성과정은 자질개선을 위하여 의료보조원법을 개정(67. 8. 23 제3192호)하여 9개월 과정으로 WHO와 UNICEF의 협조하에 국비 장학생으로 서울특별시, 부산시를 제외한 개도를 대상으로 사전 선발시험을 거쳐 시도립병원과 대한간호협회에서 국비 간호보조원을 양성하였다. 국가고시 실시후 간호보조원 면허를 줌과 동시에 의무기간(2년)동안 해당도내 보건요원으로서 국비생 전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었었다.

3. 간호보조원의 양성과 자격

보건의료망의 확장방안으로 벽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부족한 간호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6. 8. 20부터 간호학교 및 각 시도립병원 9개기관에서 국비 간호보조원을 양성하였으며, 1973년도 말까지 국비 간호보조원 양성은 종료되었다. 현재의 간호보조원 양성기관은 시설 강습소법에 준하여 문교부 산하 교육청 인가를 받고 보건사회부의 지정을 받아야 간호보조원 양성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969년도부터 간호보조원이 해외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시설 양성기관이 1970~1973년 사이에 34개소가 신설되므로써 연간 간호보조원 배

출수는 5,000~7,000명으로 해외진출에 비해 과잉 배출로 문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업무한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보조원법을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보건간호업무중심에서 임상간호업무보조중심으로 바뀌므로써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의료보조원법이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된 이후의 대비표

	의료보조원법 (73. 10. 31 이전)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73. 10. 31 이후)
지정대상기관	1. 국립보건연구원 2. 종합병원 3. 도립 및 시립병원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 종합병원 2. 병원(일반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자격기준	1. 중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 2. 만 18세 이상 여자	1. 좌 등 2. 삭제
교과내용	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 병원 16주 보건소 4주 계 9개월	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 병원 18주 보건소 2주 계 9개월
실습병원기준	실습병원의 경우 병상수 2개당 훈련생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실습병원 1개소 내지 수개소를 종합	좌 등
자격 및 시험	간호보조원 면허증(국가고시)	간호보조원 자격증(지방고시)

간호보조원의 해외 진출 현황

연수	69	70	71	72	73	74	75	76	77	계
수	61	874	988	972	511	370	107	14	0	3,897

4. 간호보조원의 업무

(1) 의료보조원법 시행령 제11조의 간호보조원

업무를 보면 “보자보건, 가족계획상담, 전염병관리, 진료 및 간호등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로 되어 있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보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결핵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었다.

(2)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간호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3. 규칙 제 1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원의 정원 전원을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간호업무로 되어 있다.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 1호—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원 정원의 100%이내.

규칙 제 14조 제 2호—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원 정원의 50%이내.

입원환자가 5인 미만인 의원급은 입원환자가 있어도 입원 일자가 짧으면 대개 경환자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원 없이 단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환자는 거의 종합병원에 이송되어 간호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5. 간호보조원의 법적 근거

가. 의료법 58조(간호보조원)

- ① 간호보조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간호보조원은 제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원에 관한 규

<80페이지에서 계속>

7. 이영복 : 전제서, pp.208
8. 의료법, 제 58조
9. 보건사회부관계법령집,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4조
10. W.H.O.; Planning and Programming for Nursing Servic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1, pp.81
11. 한국간호보조원양성소 연합회 : 기초 간호학 개요 (I), 서울, 지성문화사, 1977, pp.19
12. 이귀향, 이영복 : 전제서 pp.154~155

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나. 의료법 시행령 제 24조 제 3항(의료인 등의 정원)

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 1항 제 3호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 제 1항제 3호 : 간호원(치과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은 1인 평균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며,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 다만 치과 위생사는 간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 론

1967년부터 1977년까지 10년 동안에 양성한 간호보조원수는 40,210이며 이중에 국비 간호보조원수는 3,214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비로 양성한 간호보조원들의 대다수는 보건요원으로 보건지소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실양성소에서 양성한 간호보조원들의 일부는 해외(서독)로 진출되었고 그 외는 국내 각 의료기관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급에는 상당수의 유자격 요원이 필요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근무조건, 보수)등이 좋지 않아 간호보조원 자신이 취업을 원치 않고 있으며 대다수가 보건지소나 종합병원만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와 같이 많은 수의 간호보조원은 요구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간호보조원체도가 계속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13. A.N.A.; Statement on Auxiliary Personnel in Nursing Service,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62.
14. 대한간호협회 : 병원간호원 업무기술서 작성지침, 대한간호협회, 1973. pp.39~41
15. 이은옥 : 간호행정 및 교육에 있어서, 대한간호 제 16권 3호, 6, 1977, pp.22~25
16. 지정옥, 신유선 : 새로운 건강사업을 위한 간호와 시범사업, 대한간호, 제 15권 2호, 1976.4. pp.15~18